

제천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9. 1. 박성하의원의 4명
- 나. 회 부 일 자 : 2009. 9. 2.
- 다. 상 정 일 자 : 2009. 9. 9.(제16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회의)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박성하 의원)

가. 제안이유

- 최근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과거의 시대적 상황으로 개인적으로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많은 노인들이 근로능력과 의욕은 있으나, 일자리를 얻지 못하여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인 소외 속에서 외롭게 여생을 보내고 있는 상당수의 노인층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노인들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의 발굴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함 (안 제2조)
-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수립·추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 노인 일자리 사업추진에 관한 사무의 위·수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내지 제 7조)
- 노인 일자리 사업추진 절차, 지도감독,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8조 내지 제10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홍완식)

【 법적 검토 】

-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23조 및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 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 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 본 조례안에 대한 내용과 재정부담, 실효성, 합목적성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과 입법예고를 통한 시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음

【 행정적 검토 】

-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이 2000년에 7.2%(고령화)이던 것이 2018년에 14%(고령), 2026년에는 20%(초고령)로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젊은층 인구는 감소 추세로 고령화 뇌관은 국가·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제천시 09년 6월말 현재 시 전체 인구 135,567명중 65세 이상이 19,442명 (14.3%)으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반면에 노인 일자리 사업은 시가 추진하는 보조사업에 의한 일자리 제공이 주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 09년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 예산 1,033백만원, 참여인원 740여명 .
- 현행 노인일자리 사업으로는 근로 의욕이 높은 노인들의 기대에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공공기관이 솔선함은 물론 민간부문까지 확산시킨다면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적 부양 부담 경감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답변자 : 박성하 의원)

- **질의)** 조례내용을 보면 제도적인 어떤 장치를 마련해서 공공기관에 하는

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명중 의원)

답변) 각 실과의 의견을 받은바 조례에 명시할 수 없다고 해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의견을 수렴해서 규칙으로 정하던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삽입하는 결로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 **질의)** 민간부분이 참여는? (성명중 의원)

답변) 제천시장과 제천시의회 그리고 해당부서에서 또한 민간에서 상호 협의공동체를 구성해서 함께 노인일자리 어르신들의 문제는 수기해서 사회적인 문제로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조례안에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5. 소수의견

“없 음”

6. 토론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 가결”

8. 심사보고 붙임서류

○ 제천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1부. 끝.